

2026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반기 기준정보

2026. 7.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책자 활용 전 유의사항

본 책자는 발간 시점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변경사항은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www.gnssc.or.kr)
자료실을 통해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주요 알림사항은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로 상시 알려 드리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책자는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별 기준정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기준정보(대상 · 내용 · 주기 · 가격 등)를 준수하시고,
이 외에 모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련문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 (예탁금, 본인부담금, 이용자 카드 배송 및 수령 여부, 단말기,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바우처 결제 관련 등) ☎ 1566-3232 (단축번호4번)
행복e음 관련문의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콜센터 (대상자 신청·선정·판정, 이용자 카드 신청·재발급, 제공기관 정보입력 등) ☎ 1566-3232 (단축번호2번)
결제단말기(LG)	개통센터 ☎1899-0656 A/S센터 ☎ 1577-8911
보건복지콜센터	☎ 129

CONTENTS

순번	사업명	사업코드	시행 시군	비고	페이지
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070101	전국 표준		19
2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020112	도 전체		21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010112	도 전체	내용 변경	23
4	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040112	도 전체	폐지 (26. 7. 적용)	25
5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130812	도 전체		27
6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090112	도 전체	내용 변경	29
7	성인심리지원서비스	991112	도 전체	내용 변경	31
8	원폭피해자 종합케어서비스	990412	합천군		33
9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즐거운 노년”	990312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	내용 변경	35
10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081612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내용 변경	36
11	몸튼 마음튼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160212	창원시		38
12	u_Health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260112	창원시		39
13	취약 장애인 여가지원서비스	210112	통영시		40
14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030112	통영시, 사천시	내용 변경	41
15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사업	280212	양산시		42
16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250212	사천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43
17	찾아가는 건강운동서비스	280912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44
18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160712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45
19	노인·장애인 건강운동서비스	280712	진주시, 밀양시		46
20	바른몸 바른자세 운동서비스	280812	진주시, 사천시		47
21	1인 가구 사회성 향상 지원서비스	990812	산청군		48
22	치유농업서비스	991312	진주시,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49
23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991412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신규 (26. 7. 적용)	51
24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표준모델)	990401	창원시		54
25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표준모델)	991212	창원시		56

I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1. 경상남도 사업현황

□ 현 황

- 사업기간 : 2026. 7. 1. ~ 12. 31.
- 사업현황 : **24개 사업*** 전국 (1), 도 (5), 시·군공동 (10), 시·군·구 단독 (8)
- 적용시점 : 2026년 7월부터 적용

구분	2026년 하반기	비 고
전국 표준형 서비스 (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도 서비스 (5)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군·구 공동서비스 (10)	-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즐거운 노년”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 찾아가는 건강운동서비스 -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 노인·장애인 건강운동서비스 - 바른몸 바른자세 운동서비스 - 치유농업서비스 -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26. 7. 신규)	
시·군·구 단독서비스 (8)	- 원폭피해자 종합케어서비스 - 몸튼 마음튼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 u_Health 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 취약 장애인 여가지원서비스 -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사업 1인가구 사회성 향상 지원서비스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표준모델) -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표준모델)	

II 2026년 시·군 서비스 시행 현황(2026년 7월 기준)



지역	사업코드	사업명	시행시군
창원시 (13)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도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도
	130812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도
	991112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군·구 공동
	280912	· 찾아가는 건강운동서비스	시·군·구 공동
	990312	·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즐거운 노년”	시·군·구 공동
	160212	· 몸튼 마음튼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시·군·구 단독
	260112	· u_Health 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시·군·구 단독
	990401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표준모델)	시·군·구 단독
	991212	·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표준모델)	시·군·구 단독
진주시 (12)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도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도
	130812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도
	991112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군·구 공동
	280712	· 노인·장애인 건강운동서비스	시·군·구 공동
	280812	· 바른몸 바른자세 운동서비스	시·군·구 공동
	990312	·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즐거운 노년”	시·군·구 공동
	991312	· 치유농업서비스	시·군·구 공동
	991412	·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시·군·구 공동
통영시 (10)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도

지역	사업코드	사업명	시행시군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도
	120812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도
	991112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30112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시·군·구 공동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군·구 공동
	280912	· 찾아가는 건강운동서비스	시·군·구 공동
	210112	· 취약 장애인 여가지원서비스	시·군·구 단독
사천시 (10)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도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도
	130812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도
	991112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30112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시·군·구 공동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군·구 공동
	250212	·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시·군·구 공동
	280812	· 바른몸 바른자세 운동서비스	시·군·구 공동
김해시 (10)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도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도
	130812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도
	991112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군·구 공동
	990312	·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즐거운 노년”	시·군·구 공동
	991312	· 치유농업서비스	시·군·구 공동
	991412	·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시·군·구 공동
밀양시 (8)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도

지역	사업코드	사업명	시행시군
	130812	· 아동 · 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 · 도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250212	·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280712	· 노인 · 장애인 건강운동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990312	· 아동 · 노인 연극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즐거운 노년”	시 · 군 · 구 공동
거제시 (8)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 · 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 · 도
	130812	· 아동 · 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 · 도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 · 도
	991112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 · 도
	990312	· 아동 · 노인 연극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즐거운 노년”	시 · 군 · 구 공동
	991412	·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양산시 (10)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 · 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 · 도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 · 도
	130812	· 아동 · 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 · 도
	991112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 · 도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280912	· 찾아가는 건강운동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990312	· 아동 · 노인 연극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즐거운 노년”	시 · 군 · 구 공동
	280212	·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	시 · 군 · 구 단독
의령군 (8)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 · 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 · 도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 · 도
	130812	· 아동 · 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 · 도
	991112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 · 도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160712	·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지역	사업코드	사업명	시행시군
함안군 (7)	010112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 · 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 · 도
	130812	· 아동 · 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 · 도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 · 도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160712	·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991312	· 치유농업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창녕군 (7)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 · 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 · 도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160712	·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250212	·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991312	· 치유농업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고성군 (8)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 · 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 · 도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 · 도
	130812	· 아동 · 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 · 도
	991112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 · 도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250212	·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남해군 (10)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 · 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 · 도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 · 도
	130812	· 아동 · 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 · 도
	991112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 · 도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 · 군 · 구 공동

지역	사업코드	사업명	시행시군
	160712	·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시·군·구 공동
	250212	·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시·군·구 공동
	990312	·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즐거운 노년”	시·군·구 공동
하동군 (8)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도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도
	130812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도
	991112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도
	160712	·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시·군·구 공동
	250212	·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시·군·구 공동
산청군 (8)	010112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도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도
	130812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도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군·구 공동
	160712	·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시·군·구 공동
	250212	·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시·군·구 공동
	990812	· 1인 가구 사회성 향상지원 서비스	시·군·구 단독
함양군 (6)	010112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도
	130812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도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군·구 공동
	160712	·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시·군·구 공동
	250212	·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시·군·구 공동
거창군 (7)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
	010112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도
	130812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도

지역	사업코드	사업명	시행시군
	160712	·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시·군·구 공동
	250212	·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시·군·구 공동
	990312	·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즐거운 노년”	시·군·구 공동
합천군 (8)	010112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도
	020112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시·도
	090112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도
	130812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시·도
	08161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군·구 공동
	160712	·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시·군·구 공동
	990312	·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즐거운 노년”	시·군·구 공동
	990412	· 원폭피해자 종합케어서비스	시·군·구 단독

III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통지침



- 기준정보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기준정보 미준수 사례 발생, 따라서 주요 사항에 대한 통일된 해석으로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기본원칙

- 「2026년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기준정보」를 숙지하고 본 기준정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추진합니다.
- 본 기준정보의 안내 밑줄은 '2026년도 하반기 개정사항'을 표시한 것이므로, 서비스별 업무추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별 기준정보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기준정보 적용 시점: 2026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별 기준정보 변경 적용: 2026년 하반기 시군별 이용자 모집부터 적용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공인력을 채용해야하며 경력은 “자격증 취득 후” 또는 “학위 취득 후”부터 인정됩니다.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로서, 의 해석)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을 가진 자

- 경력 증명: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공식적인 문서로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 경력은 “근로계약 체결하여 정식으로 근로한 기간”으로 해석하며, 자원봉사·인턴·실습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충족한 자격증(자격증, 학위)에 맞는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민간자격 정보검색: www.pqi.or.kr

- 전자바우처시스템-[CSI급여 등록] **매월 25일까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급여**는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증명서 및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 추천서 등)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단, 서비스 항목별 세부 내용 참조 요망

●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에 명시된 서비스는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 기본서비스에 명시된 시간 및 횟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제공기관이 임의로 횟수 및 시간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 완료 후 제공기록지 작성 및 이용자 서명을 완료한 뒤 실시간(회당) 결제를 해야합니다.
(※ 서비스 시작 전 30분 결제 가능)
- 서비스 종류를 불문하고, 교과과정, 과제, 시험준비, 학습지(문제집)풀이 등 서비스 목적과 관계없는 다른 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별 기준정보 준수바랍니다.
-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에게 해당 월 내에 반드시 납부 받아야 하며,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됩니다.

*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음

- 월 · 분기 · 반기 · 연 1회 제공해야 하는 기본서비스는 실제 시간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사실에 대한 제공기록지 및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준정보 위반 해당

* 예시) 아동 · 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기본서비스 중 참여 아동 합주 연주(월 1회 이상)

☞ 참여아동 합동 연주한 사진(일자 확인 가능) 등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첨부

* 월 · 분기 · 반기 ·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은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예시

◇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 기본 서비스 : 체험교정운동(정적운동, 동적운동, 요가, 필라테스 등), 감각통합운동, 성장운동(주2회, 월8회)
→ 제공기록지 작성, 바우처 카드 결제
- 부가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운동계획 및 영양정보 제공(반기별 1회)
→ 제공기록지 작성, 증빙자료 관리, **바우처카드 결제 금지**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제공기관(제공인력)이 카드를 보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결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법률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사항 변경

-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제15호 서식-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변경사항 증빙서류, 제공자 등록증 첨부 제출
- * 변경사항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 (서식)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 : p249

● 제공기관 준수사항

-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 및 「2026년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기준 정보」의 추후 변경사항은 시·군·구 및 지원단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전자우편(e-mail) 및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gnss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클린센터 운영

	신고대상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불법 부당행위 일체
	신고전화	02) 6360 - 6799
	인 터 넷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we.or.kr) ⇨ 클린센터 ⇨ 신고하기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www.gnssc.or.kr) ⇨ 참여마당 ⇨ 바우처클린센터
	신고접수 처리절차	(바우처 클린신고센터) 제공자의 준수사항, 부당이득 징수 등의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 (신고자) 처리결과안내
	비 고	※ 신고자료의 보관이나 처리결과 통보 등을 위한 신고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이용기관명 등을 수집 ※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기본정보 사항(이름, 지역, 연락처 등) 필수입력 후 신고접수 가능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또는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와 제공인력(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제공인력(제공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IV 사업별 주요내용



구분	사업명	코드번호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횟수/시간	서비스가격 (단위 : 천원)	기간 (재판정)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표준)	070101	· 소득기준 없음 - 만24세 이하 장애인·청소년 ※ 가구특성기준 참조	· 보조기기 대여 및 맞춤 지원 · 점검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 렌탈 12개월 · 정기점검 연2회	· 120천원 (지원금) 84~108 (본인부담) 12~36	12개월 (재판정 5회)
아동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경남형)	020112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만0~6세 ※ 가구특성기준 참조	· 부모교육/상담 · 발달지연 영역 (발달기초, 언어발달, 정서사회적) 발달촉진 조기중재서비스	· (1:3인 이하) · 월4회(주1회) / 50분 (부모상담 10분 포함)	· 200천원 (지원금) 160~180 (본인부담) 20~40	12개월
아동 · 청소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010112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만18세 이하 ※ 가구특성기준, 우선순위 참조	· 심리상담 · 아동·청소년·가족·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음악)	· (1:1~1:3인 이하) - (1:1인) / 50분 - (1:2인 이하) / 70분 - (1:3인 이하) / 90분	· 180천원 (지원금) 72~162 (본인부담) 18~108	12개월 (재판정 1회)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130812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만7~15세	· 비전형성프로그램 · 현장체험활동	· 비전형성기본유형 (1:12인 이하) · 체험통합형(1:12인 이하) -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1:3인 이하)	· 140천원 (지원금) 112~126 (본인부담) 14~28	12개월
장애인	정신건강도달 케어서비스	090112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정신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가구특성기준 참조	· 초기상담 · 보건복지의료연계 및 증상관리 · 일상생활지원	· (1:1인) · 월4회(주1회) / 60분	· 200천원 (지원금) 180 (본인부담) 20	12개월 (재판정 4회)
성인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991112	· 소득기준 없음 - 만35세 이상 ※ 가구특성기준, 우선순위 참조	· 사전검사사후검사 · 심리상담	· (1:1인) · 월4회(주1회) / 60분	· 200천원 (지원금) 50~180 (본인부담) 20~150	12개월 (재판정 1회)
성인	원목파해자 종합케어 서비스	990412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가초연금수급자 - 연령제한 없음 ※ 가구특성기준 참조	· 정서지원 · 건강지원	· 정서지원(1:10인 이하) - 월4회(주1회) / 60분 · 건강지원(1:4인 이하) - 월8회(주2회) / 60분	· 180천원 (지원금) 162 (본인부담) 18	12개월 (재판정 7회)
아동 · 노인	아동·노인연극 교육서비스	990312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5~19세 이하 아동 및 만 60세 이상 노인	· 초기상담 · 연극활동 · 공연발표회	· (1:10인 이하) · 월8회 - 초기상담(연2회 / 90분) - 연극활동(월8회 / 90분) - 공연발표회(연1회)	· 200천원 (지원금) 180 (본인부담) 20	12개월 (재판정 1회)
노인 · 장애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081612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만 60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연령무관 ※ 가구특성기준 참조	· 안마서비스	· (1:1인) · 월4회(주1회) / 60분	· 180천원 (지원금) 108~162 (본인부담) 18~72	12개월
아동	몸튼마음튼 꿈나무육성 프로그램	160212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만7~12세	· 운동처방 · 운동지도서비스	· (1:15인 이하) · 월8회(주2회) / 60분	· 150천원 (지원금) 120~135 (본인부담) 15~30	12개월
성인	u_Health 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260112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만20세 이상 ※ 가구특성기준 참조	· 건강측정 · 전화 및 대면상담	· (1:1인) - 대면상담 월1회(20분) - 전화상담 월1회 - 건강정보SMS 월4회 등	· 70천원 (지원금) 63 (본인부담) 7	9개월

구분	사업명	코드번호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횟수/시간	서비스가격 (단위 : 천원)	기간 (재판정)
장애인	취약장애인 여가지원서비스	210112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제한 없음 ※ 가구특성기준 참조	· 미술, 체육, 음악 등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 (1:1인) · 월 7회(60~90분)	· 175~196천원 (지원금) 160 (본인부담) 15~36	12개월 (재판정 1회)
아동 · 청소년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030112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만7~18세 ※ 가구특성기준 참조	· 악기연주 · 정서순환프로그램 · 연중회관관, 합주 등	· (1:3인 이내) 소그룹 · 월8회(주2회) / 60분	· 200천원 (지원금) 160~180 (지원금) 20~40	12개월 (재판정 1회)
아동 성인 노인	맞춤형 헬스케어사업	280212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만7~12세, 만30~75세 ※ 가구특성기준 참조	· 건강운동서비스 · 건강생활교육 · 기초체력측정	· (1:25인 이하) · 월12회(주3회) / 60분	· 180천원 (지원금) 160 (본인부담) 20	12개월
노인	노인두뇌 건강지원서비스	250212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65세 이상	· 두뇌활동교육 · 체험힐링서비스	· 두뇌활동교육(1:4인 이하) - 월4회(주1회) / 60분 · 체험힐링서비스 (1:20인 이하) - 체험교육(연2회)	· 160천원 (지원금) 144 (본인부담) 16	12개월
노인 · 장애인	찾아가는 운동서비스	280912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연령무관) ※ 가구특성기준 참조	· 바른체형운동 · 기초체력검사 · 건강정보	· (1:5인 이하) - 월12회(주3회) / 60분 · (1:6~1:10 이하) - 월12회(주3회) / 90분	· 200천원 (지원금) 190 (본인부담) 10	12개월
아동 · 청소년	바른체형기성장 운동서비스	160712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6세~16세 ※ 우선순위 참조	· 체형교정운동 · 맞춤형 운동계획 · 영양정보제공	· (1:15인 이하) · 월8회(주2회) / 60분	· 200천원 (지원금) 140~180 (본인부담) 20~60	12개월 (재판정 1회)
노인 · 장애인	노인·장애인 운동서비스	280712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 65세 이상 노인 ※ 가구특성기준 참조	· 건강검검 · 운동프로그램	· (1:25인 이하) · 월8회(주2회) / 90분	· 120천원 (지원금) 110 (본인부담) 10	12개월
노인	바른몸 바른자세 운동서비스	280812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 65세 미만 ※ 우선순위 참조	· 통증자각도 검사 · 자세교정 · 기초체력검사	· (1:10인 이하) - 월8회(주2회) / 60분	· 180천원 (지원금) 160 (본인부담) 20	12개월
성인 노인	1인가구 사회성 향상 지원서비스	990812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 20~70세이하, 1인 가구 ※ 우선순위 참조	· 사회성향상지원서비스 · 돌봄활동서비스 · 방문케어서비스	· (1:10인 이하) · 월4회(주1회) / 100분	· 200천원 (지원금) 180 (본인부담) 20	12개월 (재판정 1회)
장애인 노인	치유농업서비스	991312	· 소득기준 없음 · 만 10세 이상 중 - 발달장애인, 경도인지장애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서비스	· (1:1~10인 이하) - 월4회(주1회) / 120분	· 200천원 (지원금) 120~180 (본인부담) 20~80	12개월 (재판정 1회)
가족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 서비스	991412	· 소득기준 없음 ·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	· 심리검사 · 가족역동분석 · 가족상담(F1~F3 유형)	· 1:1 가구 - 월4회(주1회) 90분~120분 - 가족상담, 가족역동분석	· 280천원 (지원금) 70~252 (본인부담) 28~210	5개월
청년	〈청년사업단〉 청년신체건강 증진서비스	990401	· 소득기준 없음 · 19세~34세 청년 · BMI 23 이상 18.5 미만인 자	· 건강 및 운동서비스 - 개인운동 훈련 - 자세·체형교정	· 1:1~1:4 - 주1회~주3회 - 회당 60분~회당 90분	· 240천원	3개월 (재판정1회)
청년	〈청년사업단〉 초등돌봄서비스 창의예술지원	991212	· 소득기준 없음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 돌봄프로그램 - 창의예술 놀이, 독서 등 · 예술전문프로그램 - 음악, 미술, 문화 등	· 1:1 - 월4회(주1회) - 돌봄프로그램 : 1시간 -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 240천원	6개월

V 2026년 하반기 경남 기준정보 개정사항 *적용시점 : 2026년 7월



● 주요 개정사항

연번	서비스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 가격 인상 (월 16만원 → 월 18만원) - 소득기준 확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180% 이하)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단가 현실화 및 소득기준 확대를 통한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
2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서비스 폐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초기 사업 도입 목적의 필요성이 감소하였으며, 유사 서비스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폐지
3	아동·노인 연극교육 서비스	- 기본서비스 내용 수정 - 문화·음악활동 내용 삭제 - 부가서비스 중 봉사활동 내용 삭제 - 제공인력 자격기준 정비	연극 중심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제공내용과 제공인력 기준 재정비
4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서비스 가격 인상 (월 16.8만원 → 월 18만원) - 가구특성 기준 및 우선순위 기준 조정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단가 현실화 및 서비스 필요도에 기반한 대상자 선정 체계 개선
5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	- 중복제한 사업 명칭 변경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사업)	보건복지부 사업명 변경(26.1월)에 따른 기준정보 정비
6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 우선순위 내용 명칭 변경 (정신보건센터장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건강복지법」 상 법령 용어 반영
7	가족 온(溫) 마음 회복 지원서비스	- 신규 서비스 도입(진주, 김해, 거제)	

● 하반기 기준정보 개정 내용

서비스명	2026년 상반기	2026년 하반기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01011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특성 욕구판단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② 의사 진단서·소견서 ③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1급, 2급) 소견서 ④ 드림스타트 센터장, Wee센터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추천서 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	가구특성 욕구판단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② 의사 진단서·소견서 ③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1급, 2급) 소견서 ④ 드림스타트 센터장, Wee센터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추천서 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

서비스명		2026년 상반기				2026년 하반기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중위소득 140% 이하						
		정부 지원	144,000	128,000	112,000						
		본인 부담	16,000	32,000	48,000						
회당		36,000	32,000	28,000							
• 제공기간 : 12개월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중위소득 120%초과 ~ 140% 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 160% 이하	중위소득 160%초과 ~ 180% 이하				
		정부 지원	162,000	144,000	126,000	108,000	72,000				
		본인 부담	18,000 (10%)	36,000 (20%)	54,000 (30%)	72,000 (40%)	108,000 (60%)				
회당		40,500	36,000	31,500	27,000	18,000					
• 제공기간 : 12개월											
아동·노인 연극교육 서비스 991312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 등록) ② 집단규모 : 1:10 이하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① 심리, 정서 상담 ② 창작극 제작을 위한 스토리텔링 교육 ③ 문학교육 프로그램(문학) ④ 연극실기 교육(연극) ⑤ 연극 활용소품 제작(미술) ⑥ 연극 활용 음악배우기, 타악, 합주연습(음악)			월 8회 *활동별 시간상이 적용 •진단평가 (연2회/90분) •문화활동 (월1회/120분) •연극활동 (월8회/90분) •음악활동 (월3회/90분) •공연발표회 (연1회)					
		부가 서비스	① 공연관람(연극, 전시회) ② 연극, 공연, 축제행사 등 봉사활동 참여								
제공인력 자격기준		① 연극과, 미술과, 뮤지컬학과, 성악과, 음악과, 무용과 등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3개 작품 이상 공연 경력자 ②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제1항에 의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③ 「자격기본법」 제17조 1항에 의한 문화예술분야 민간자격증 소지자 ④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6686호에 의해 연극, 무용, 국악, 영화, 만화/애니, 공예, 사진, 디자인 예술강사로 선정되어 학교 및 사회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									
		제공인력 자격기준									
		① 연극과, 미술과, 뮤지컬학과, 성악과, 음악과, 무용과 등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3개 작품 이상 공연 경력자 ②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제1항에 의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③ 「자격기본법」 제17조 1항에 의한 「연극」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26년 7월 이전 제공인력은 아동·노인 연극 분야 실무경력 1년 인정(단, 1년의 유예기간(26.7.1.~27.6.30.)동안 명시된 자격을 취득하고, 취득 후, 사군 보고 필수*) * 해당 기간 내 자격 취득 후, 미 보고 시, 제공인력 자격기준 미준수로 간주함. - 자격증명 「연극」 미 표기 시, 해당 자격 미인정 ④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6686호에 의해 연극, 무용, 국악, 영화, 만화/애니, 공예, 사진, 디자인 예술강사로 선정되어 학교 및 사회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									
		제공인력 자격기준									
		① 연극과, 미술과, 뮤지컬학과, 성악과, 음악과, 무용과 등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3개 작품 이상 공연 경력자 ②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제1항에 의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③ 「자격기본법」 제17조 1항에 의한 문화예술분야 민간자격증 소지자 ④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6686호에 의해 연극, 무용, 국악, 영화, 만화/애니, 공예, 사진, 디자인 예술강사로 선정되어 학교 및 사회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									
사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081612		가구특성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이용자 선정 세부사항									
		① 서비스 대상 질병분류코드(G, M, I 및 R810, E10~15)가 실별 가능한 증빙서류									
		가구특성 욕구기준									
사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081612		①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②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③ 질병, 상해로 3개월 이상 지속적 통증, 재활치료 대상자(신청시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재활 필요라는 내용명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택1 제출) ④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가구특성 욕구기준									
		①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②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③ 질병, 상해로 3개월 이상 지속적 통증, 재활치료 대상자(신청시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재활 필요라는 내용명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택1 제출) ④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가구특성 욕구기준									
		①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②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③ 질병, 상해로 3개월 이상 지속적 통증, 재활치료 대상자(신청시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재활 필요라는 내용명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택1 제출) ④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서비스명	2026년 상반기	2026년 하반기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의사 처방전, 기타 증빙서류」 중 한가지 제출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가격 : 월 168,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table><tr><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 차상위)</td><td>151,200</td><td>16,800</td></tr><tr><td>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 차상위가 아닌 자)</td><td>134,400</td><td>33,600</td></tr><tr><td>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td><td>117,600</td><td>50,400</td></tr><tr><td>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 ~160% 이하)</td><td>100,800</td><td>67,200</td></tr></table> •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금액 <table><tr><th>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r><tr><td>회당 결제 금액</td><td>37,800원</td><td>33,600원</td><td>29,250원</td><td>25,200원</td></tr></table> • 제공기간 : 12개월 • 재판정 : 없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 차상위)	151,200	16,800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 차상위가 아닌 자)	134,400	33,600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117,600	50,400	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 ~160% 이하)	100,800	67,20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회당 결제 금액	37,800원	33,600원	29,250원	25,200원	• 이용자 선정 세부사항 ※ ①~③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의사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0, E10~15) 중 1가지 제출 ※ ②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확인 및 제출 ※ ①~④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한의원 제외 우선순위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상이등급 판정자(국가유공자) 3. 질병, 상해로 3개월 이상 지속적 통증, 재활치료 대상자 4.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가격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table><tr><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 차상위)</td><td>162,000</td><td>18,000</td></tr><tr><td>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 차상위가 아닌 자)</td><td>144,000</td><td>36,000</td></tr><tr><td>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td><td>126,000</td><td>54,000</td></tr><tr><td>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 ~160% 이하)</td><td>108,000</td><td>72,000</td></tr></table> •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금액 <table><tr><th>구분</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r><tr><td>회당 결제 금액</td><td>40,500원</td><td>36,000원</td><td>31,500원</td><td>27,000원</td></tr></table> • 제공기간 : 12개월 • 재판정 : 없음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 차상위)	162,000	18,000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 차상위가 아닌 자)	144,000	36,000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126,000	54,000	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 ~160% 이하)	108,000	72,00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회당 결제 금액	40,500원	36,000원	31,500원	27,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 차상위)	151,200	16,800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 차상위가 아닌 자)	134,400	33,600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117,600	50,400																																																		
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 ~160% 이하)	100,800	67,20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회당 결제 금액	37,800원	33,600원	29,250원	25,2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 차상위)	162,000	18,000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 차상위가 아닌 자)	144,000	36,000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126,000	54,000																																																		
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 ~160% 이하)	108,000	72,00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회당 결제 금액	40,500원	36,000원	31,500원	27,000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040112		• 2026년 하반기 폐지 ※ 적용시점 : 2026년 7월 적용																																																		
가족 온(溫) 마음 회복 지원 서비스 991412		• 2026년 하반기 신규 ※ 추진지역 : 진주, 김해, 거제																																																		
중복 제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 중복제한 사업 명칭 변경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사업																																																		
우선 순위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우선순위 내용 명칭 변경 * 정신보건센터장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VI 2026년도 하반기 서비스 신규 *2026년 7월부터 적용



서비스명		수행시군	변경 전 '26. 1월'	변경 후 '26. 7월'	비고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시·군·구 공동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	서비스 신규	

VII 2026년도 하반기 서비스 폐지 *2026년 7월부터 적용



서비스명		수행시군	변경 전 '26. 1월'	변경 후 '26. 7월'	비고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도 전체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서비스 추진	서비스 폐지	

[참고]

- 2026년 상반기(7월 이전) 선정된 이용자 해당 바우처 종료일까지 서비스 제공가능
 - ☞ 모든 이용자 서비스 종료 이후 폐업절차 진행
 - ☞ 예시) 2026년 2월 선정 이용자 이용기간: 2026. 2. 1. ~ 2027. 1. 31. 이므로 2027년 2월 폐업처리
-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폐지에 따라 모든 이용자 서비스 종료 이후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폐업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세부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코드 070101

항 목	내 용								
목 적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추진지역 (전국 표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	●	●	●	●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	●	●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연령기준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가구특성	• 장애 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 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 청소년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 (부장애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12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부담 70~90%/본인부담금 10~30%)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24,000원			36,000원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5회 (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 등급씩 하향 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혼합형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② 집단규모 : 해당 없음 ※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과 중복불가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①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②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③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차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④ 서비스 제공 절차 1단계 :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렌탈12개월, 연중렌탈 및 점검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제공인력 자격기준	※ 다음 ①~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적합한 제공인력		
	자격 기준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의자·보조기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 기준 ②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세부 자격	㉠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사업코드 020112

항 목		내 용							
목 적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추진지역 (시도 개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	●	●	●	●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	●	●	●	●	●	●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만 0-6세							
	가구특성	•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지속관리필요],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필수 제출서류 영유아건강 검진 결과서(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부터 신청일까지만 인정)							
		•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추적검사 요망]을 받은 영·유아 아동 중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자							
		필수 제출서류	영유아건강검진결과서+발달검사(*인정되는 발달검사 참조)결과서						
		이용자 선정 세부 사항							
	*인정되는 발달 검사	K-ASQ, KDEP, SELSI, Denver-II, K-DST, KCBC, KCDI, CBCL REVT, PRES, U-TAP, U-TAP2(개정판)							
※ 해당 발달검사들의 결과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지만 허용									
서비스 제외 대상자	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이용 중인 자(행복-e음 확인) ② 여성가족부 가족센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을 이용 중인 재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③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거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 및 입학 예정자 ④ 영유아발달서비스(사업코드: 020201) 선정 이력이 있는 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확인)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 지원금	총액	180,000원			160,000원			
		회당 결제 금액	45,000원			4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없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추가확보 시설 등록 불가) ② 집단규모 : 1:30이하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①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 중재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40분) ②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10분) - 대면, 유선 상담 방식인정 - 제공기록지 부모교육 및 상담내용 작성 필수	월4회, 주1회 (회당 50분)
제공인력 자격기준	※ 다음 ①~④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자격기준 ①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기준 ②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자격기준 ③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세부 자격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실무경력 인정 근무 형태 중 무보수 형태(*자원봉사, 재능기부, 실습) 기간 제외	
자격기준 ④	예외 인정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변경 사업코드 010112

항 목		내 용								
목 적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추진지역 (사도 개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	●	●	●	●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	●	●	●	●	●	●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가구특성 육구판단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뇌전증)만 포함) ■ 육구판단은 다음 ①~⑤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함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② 의사 진단서·소견서 ③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1급, 2급) 소견서 ④ 드림스타트 센터장, Wee센터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추천서 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 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참고 2 양식(P293~301)으로 판정] ※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혹은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할 수 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할 수 있음								
		중복제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사업(구,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행복e-음에서 확인)							
		우선순위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아동·청소년 ②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 신경분과(소아·청소년 신경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아동·청소년 ③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1급, 2급) 소견서 제출 아동·청소년 ④ 기타 전문가(육구판단 ④~⑤) 추천 아동·청소년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26. 7. 선정 이용자 해당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160% 이하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 180% 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108,000원	7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10%)	36,000원(20%)	54,000원(30%)	72,000원(40%)	108,000원(60%)				
	회당결제금액	40,500원	36,000원	31,500원	27,000원	18,000원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1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등록) ② 집단규모 : 1:1(50분) / 1:2 이하(70분) / 1:3 이하(90분) ※ 1:1 원칙(서비스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3 이내 가능) ③ 서비스 내용 -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운동·재활 제외)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①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필요시) ② 기본적인 아동 조기 개입서비스		월4회, 주1회 1:1(50분) 1:2(70분) 1:3(90분)
		놀이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언어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인지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 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미술·음악 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 또는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및 감각발달 향상			
제공인력 자격기준	※ 다음 ①~④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자격기준 ①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 학교 정교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자격기준 ②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자격기준 ③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세부자격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자격기준 ④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예외인정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26. 7. 폐지]

사업코드 040112

항 목	내 용									
목 적	■ 인터넷 과다 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추진지역 (시도 개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	●	●	●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	●	●	●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아동								
	가구특성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K척도 등)결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회당 결제 금액	45,000원				40,000원				
	② 제공기간 : 12개월 / 월4회, 주1회									
	③ 재 판 정 : 없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② 집단규모 : (심리상담) 1:1 / (대체활동) 1:10 이하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①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 중독위험정도를 진단							최초1회	
		② 치료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최초1회	
		③ 심리상담							주1회(50분) 초기6개월	
		④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부모, 자녀 동반 캠프)							1박2일	
		⑤ 부모상담 및 교육							월1회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① 인터넷·게임 대체활동(10인이내)							주1회(50분) 후기3개월	
②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 동기부여,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주1회(50분) 후기3개월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 기준 1	■ 기본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①~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울시 I will 센터의 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과정 이수자로서 다음 (㉗~㉙)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단,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상담과정은 2015년까지 이수한 자에 한해 인정) ㉗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㉘ 한국상담학회·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 관련 자격 취득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㉙ 청소년(지도)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다음 (㉚~㉜)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세부자격	㉚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㉛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㉜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②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예외인정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자격 기준 2	■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①~④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㉝~㉟)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세부자격	㉝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㉞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 ㉟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예외인정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 폐지 사유 : 시대적 변화에 따라 초기 사업 도입 목적의 필요성이 감소하였으며, 유사 서비스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폐지

※ 2026년 상반기(7월 이전) 선정된 기존 이용자의 바우처는 종료일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모든 이용자 서비스 종료 이후 폐업절차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문의 바랍니다.
 (참고: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P134 및 서식 P225~P229)



아동 · 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사업코드 130812

항 목	내 용									
목 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추진지역 (시도 개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	●	●	●	●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	●	●	●	●	●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만 7~15세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14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26,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28,000원			
	회당 결제 금액	기본유형		8회	15,750원		8회	14,000원		
		체험통합형		4회	31,500원		4회	28,000원		
		농어촌· 도서지역	기본유형	4회	31,500원		4회	28,000원		
			체험통합	3회	42,000원		3회	1~2회차 37,300원 3회차 37,400원		
				4회	31,500원		4회	28,000원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없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등록)									
	② 집단규모 : ㉠ 비전형성 기본유형 - 1:12 이하 ㉡ 체험 통합형 : 1:12 이하 (※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1:3 이하)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비전형성 기본유형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제외					- 주2회, 회당 90분			
							- 농어촌, 도서지역(1:3 이내) : 주1회, 회당 120분			
	체험 통합형	·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 병행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제외					- 기본유형(월3회, 회당 120분) + 체험(월1회, 회당 480분)			
							- 농어촌, 도서지역(1:3 이내) : 기본유형(월3회, 주1회, 회당 120분) + 체험(격월1회, 회당 480분)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 기준 1	■ 비전형성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①~④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세부 자격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예외 인정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 코칭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 코칭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예외 인정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 체험활동 제공인력은 다음 ①~③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세부 자격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자격 기준 2	예외 인정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

변경 사업코드 090112

항 목		내 용							
목 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지역 (시도 개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	●	●		●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	●	●	●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정신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제한없음							
	가구특성	① 정신장애인(조현병,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서비스 제외대상자	㉠ 위 ②항의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상의 질병분류코드(F00, F01, F02, F03, G30) 진단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 제외(치매 관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 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月)에 한해서만 서비스 제외 ㉢ 입·퇴원일과 상관없이 월(月)별 입원 일수 16일 이상일 경우 서비스 제외							
	중복제한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사업(구,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금액		180,000원			20,000원			
	회당 결제 금액		45,000원			-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4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 ② 집단규모 : 1:1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①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②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압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③ 증상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월4회, 주1회 (회당 60분)	

	④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⑤ 사회적 및 취업 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 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 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제공인력 자격기준	※ 다음 ①~④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② 임상심리사 ③ 간호사 ④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1명 이상 채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반기별 1회 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 지도 필수 * (경남) 정신건강전문요원 인정범위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단,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제외)	



성인심리지원서비스

변경 사업코드 991112

항 목		내 용							
목 적		■ 도내 성인의 심리안정지원 및 심리적 문제의 조기 개입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							
추진지역 (시도 개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	●	●		●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연령기준	만 35세 이상							
	가구특성	①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부터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 중 우울증 관련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자							
		필수 증빙서류 (㉠~㉣ 동시제출)	㉠ 임신부 : 임신확인서 / 산모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 산후 및 임신 중 우울증 관련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인정)						
		②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직계가족이 사망한 가구 중 신청자 기준 도내 18개 시·군 거주 등록자(사망자 기준 등록지 증빙 불필요)							
		필수 증빙서류 (㉠~㉣ 동시제출)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③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자							
	④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희망하는 자								
중복제한	「정신건강도달케어서비스」,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사업(구.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중 심리지원서비스(특화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행복-e음 확인)								
우선순위	1. 산후 및 임신 중 우울증 관련 의사 진단서·소견서(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가족(직계)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자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또는 연계 공문 4. 시·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서 또는 연계 공문 5.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희망하는 자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160% 이하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00,000원	5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60,000원	100,000원	150,000원			
	회당결제금액	45,000원	40,000원	35,000원	25,000원	12,500원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1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본형 : 기관방문형 ㉡ 선택형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산후 우울증 진단·소견자 및 2순위 이용자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한하여 재가방문 및 서비스 제공 가능 ※ 재난 상황 선포에 따른 온라인 상담 실시 가능			
	② 집단규모 : 1:1 ③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제공 주기
	사전·사후 검사	①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진단 (검사도구 : MMPI-2, KFD, SCT, BDI, STAli, PTSD척도 검사, EPDS, 양육스트레스 검사 활용)	사전·사후 각1회	월4회, 주1회
서비스 제공	②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60분		
	※ 첫월과 말월에는 사전·사후 검사 포함하여 월 4회 서비스 제공 ※ 사전·사후 검사 시간이 제공 시간 기준에 미충족하면 미충족 시간은 서비스 제공으로 대체 가능			
온라인 대면 서비스 제공방법	※ 컴퓨터(웹캠·마이크 포함), 노트북(카메라·마이크 내장) 등의 기기 및 플랫폼(Zoom, Web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 제공 ※ 화상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화상담 가능 ※ 온라인서비스 제공불가(정부의 재난상황 조치 경우, 온라인 상담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	※ 다음 ①~③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자격 기준 ①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 기준 ②	세부자격	• 최종 학위 기준 심리학과, 상담학과 등 심리 및 상담 분야 학위 취득 후 관련기관 실무경력이 아래 (㉠~㉣)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학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석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미인정 자격기준	전문학사만 취득자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학사만 취득자)		
자격 기준 ③	• 심리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실무경력 인정 근무 형태 중 무보수 형태(자원봉사, 재능기부, 실습) 기간은 제외			



원폭피해자 종합케어서비스

사업코드 990412

항 목		내 용							
목 적		■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 케어서비스							
추진지역 (시군 단독)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기준	제한없음							
	가구특성	① 대한적십자사 등록 ② 원폭피해자 및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자(1세) 및 그 후손(2,3세) ③ 원폭피해자의 가족(배우자)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금액	162,000원				18,000원			
	회당 결제 금액	정서지원(4회)		40,500원		-			
		건강지원(8회)		20,250원		-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7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등록)								
	② 집단규모								
	㉠ 정서지원 : 1:10 이하 (1:3명까지 60분, 4명 이상일 경우 1명당 20분 추가)								
	㉡ 건강지원 : 1:4 이하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 아래 ①, ②유형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진행							① 정서지원 월4회/주1회 (회당 60분)	
	① 정서지원 - 개별상담(개인별 심리검사 및 심층상담) - 집단 상담, 가족상담, 문화 및 대인관계 증진서비스								
	② 건강지원 - 운동지도(근육이완 및 평행성 운동, 근력, 중심이동, 오감자극 운동, 준비/정리운동), - 건강정보 교육(건강생활 안내 및 낙상 예방운동, 건강자료 가정통신문 제공) - 문화치매 예방서비스							② 건강지원 월8회/주2회 (회당 60분)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정서지원 제공인력은 다음 (자격기준 1~2)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자격기준 1	•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①~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2에 의한 임상심리사 ② 「자격기본법」 제17조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자격기준 2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①~③)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②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개월 이상 ③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①~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자격기준 3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따른 스포츠지도사* * 1급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강교육 및 영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다음 (①~④)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자격기준 4	①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2에 의한 보건교육사 ③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노인운동 및 운동지도, 운동처방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제공인력 자격기준 예외인정	※ 제공인력 자격기준 (2~4)번에 한해 예외 인정 • 자격기준 (2~4)에 한해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행복한 아이-즐거운 노년"

변경

사업코드 990312

항 목	내 용									
목 적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소외계층 노인 분들에게 종합문화예술교육인 연극교실(연극/미술/음악/무용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및 공연제작, 공연관람, 작품제작 및 전시 등 다양한 예술 및 정서체험학습을 통하여 성취감/협동심/사회성/자신감/표현력 등을 길러 가정과 사회의 자긍심 향상									
추진지역 (시·군·구 공동)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	●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만 5~19세 이하의 아동 및 만 60세 이상 노인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금액		180,000원				20,000원			
	회당 결제 금액		22,500원				-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1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 등록) ② 집단규모 : 1:10 이하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① 초기상담 : 심리, 정서 지원 ② 창작극 제작을 위한 스토리텔링 교육 ③ 문학교육 프로그램(문학) ④ 연극실기 교육(연극) ⑤ 연극 활용소품 제작(미술) ⑥ 연극 활용 음악배우기, 타악, 합주연습(음악)					월 8회* 활동별 시간상이 적용 • 초기상담(연2회/90분) • 연극활동(월8회/90분) • 공연발표회(연1회)			
	부가 서비스	① 공연관람(연극, 전시회) ② 연극, 공연, 축제행사 등 봉사활동 참여								
	※ 다음 ①~④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기준 ①	• 연극과, 미술과, 뮤지컬학과, 성악과, 음악과, 무용과 등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3개 작품 이상 공연 경력자								
	자격기준 ②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제1항에 의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기준 ③	• 「자격기본법」 제17조 1항에 의한 '연극'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26년 7월 이전 제공인력은 아동노인 연극 분야 실무경력 1년 인정. (단, 1년의 유예기간('26.7.1.~'27.6. 30.)동안 명시된 자격을 취득하고, 취득 후, 사군 보고 필수*) * 해당 기간 내 자격 취득 후 미 보고 시, 제공인력 자격기준 미준수로 간주함. - 자격증명 「연극」 미 표기 시, 해당 자격 미인정								
	자격기준 ④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6686호에 의해 연극, 무용, 국악, 영화, 만화/애니, 공예, 사진, 디자인 예술강사로 선정되어 학교 및 사회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변경 사업코드 081612

항 목		내 용								
목 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추진지역 (시·군·구 공동)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	●	●	●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	●	●		●	●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가구특성 육구기준	① <u>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u> ② <u>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u> ③ <u>질병, 상해로 3개월 이상 지속적 통증, 재활치료 대상자(※ 신청시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재활 필요”라는 내용명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택1 제출)</u> ④ <u>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u>								
		이용자 선정 세부사항	※ ①~③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의사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0, E10~15)중 1가지 제출 ※ ②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확인 및 제출 ※ ①~④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u>한의원 제외</u>							
			서비스 제외 대상자	•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서비스코드: 080312, 080412, 080512, 080612, 080712, 080812, 080912, 081412, 081512) 선정 이력이 있는 자 ※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확인						
우선순위		1.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2. <u>상이등급 판정자(국가유공자)</u> 3. <u>질병, 상해로 3개월 이상 지속적 통증, 재활치료 대상자</u> 4. <u>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u> 5. <u>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 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u>								
서비스가액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26. 7. 선정 이용자 해당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	18,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44,000원	3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126,000원	54,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160%이하)						108,000원	72,000원	
		②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금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회당 결제금액	40,500원	36,000원	31,500원	27,000원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없음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등록) ② 집단규모 : 1:1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 전신안마 · 지압 · 마사지 · 발마사지 · 자극요법 · 체형교정 · 운동요법 서비스 제공	월4회, 주1회 (회당 60분)
세부내용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 회당 60분의 서비스 시간 내에서, 5분 상담, 45분 수기요법, 10분 비(非)수기요법(전기 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제공 - (상담) 서비스 대상자 상태 확인 및 서비스 주의사항 안내 등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 작성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님 - (비수기요법 예시) 적외선 치료기, 전기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자기장치료기 등 전기기구의 사용 및 찜질 등의 온열치료요법 <참고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공인력 자격기준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몸튼 마음튼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사업코드 160212

항 목		내 용								
목 적		▪ 저소득, 방과 후 나홀로 있는 아동들의 욕구불만 해소 및 정신건강을 위해 놀이를 접목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및 상담 등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추진지역 (시군 단독)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만 7-12세								
	중복제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 지원 불가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15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35,000원				120,000원			
	본인부담금		15,000원				30,000원			
	회당 결제 금액		1~7회차		16,880원		1~8회차		15,000원	
			8회차		16,840원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없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② 집단규모 : 1:15 이하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서비스		▫ 저소득, 빈곤 및 소외된 아동, 방과 후 나홀로 있는 아동들의 욕구불만 해소 및 정신건강을 위해 기초종목(육상, 수영, 체조)에 놀이를 가미시킨 운동처방서비스 및 운동지도서비스 제공						기본서비스 월8회, 주2회 (회당 60분)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기준 1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①~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세부 자격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따른 스포츠지도사* *1급·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자격기준 2	▪ 건강교육 및 영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 간호사								



u_Health시스템을 이용한 지역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코드 260112

항 목		내 용							
목 적		■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u_Health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							
추진지역 (시·군·구 단독)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만 20세 이상							
	가구특성	대사증후군 증상 유소견자(1개 이상)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7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금액		63,000원			7,000원			
	② 제공기간 : 9개월 ③ 재 판 정 : 없음								
세부내용	■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 등록) ■ 집단규모 : 1:1 ■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서비스	□ 개인별 u_Health 측정장비(체성분, 혈압, 활동량 측정을 위한 장비)제공 - 가정용 장비 또는 커뮤니티 베이스 장비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u_Health 시스템을 활용한 1:1맞춤형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측정 및 문진, 월 전화상담, 대면상담 1회(영양운동 등), u_Health 시스템을 통한 원격모니터링(web이나 스마트폰 활용), SMS DM발송						대면상담 월1회 : 회당 20분 내외	
								전화상담 월1회	
								측정결과 및 건강정보지 우편 발송 월1회	
								건강정보 SMS 월4회 이상	
								실적보고 월1회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기준 1	■ 건강상담·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인력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기준 2	■ 운동지도 제공인력은 다음 ①~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따른 스포츠지도사* * 1급·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운동처방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또는 스포츠의학·운동처방·체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운동지도 분야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취약 장애인 여가지원서비스

사업코드 210112

항 목		내 용							
목 적		■ 여가 활동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음악, 미술 등 여가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지 및 장애인 삶의 질 제고							
추진지역 (시·군·구 단독)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제한 없음							
	가구특성	통영시 등록 시설 및 재가 장애인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175,000 ~ 196,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금액	160,000원				수급자 및 차상위	15,000원		
						일반	36,000원		
	회당 결제 금액	1~6회차	22,850원	-	-				
		7회차	22,900원						
세부내용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② 재 판 정 : 1회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② 집단규모 : 1:1								
세부내용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 여가 활용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미술, 음악, 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월 7회 (회당 60~90분)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 기준 1	세부 자격	■ 비전형성 프로그램 및 아동 리더십 증진 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①~③)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 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②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자격 기준 2	세부 자격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단, 아동 리더십 증진 서비스의 경우, 아동·청소년 리더십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리더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①~③)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자격 기준 3	세부 자격	①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 인력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격 기준 3	세부 자격	■ 학습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아동 · 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변경 사업코드 030112

항 목		내 용							
목 적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추진지역 (시·군·구 공동)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만 7-18세							
	가구특성	• 다음 가구특성 ①~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 평가도구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② 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중복제한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사업(구,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회당 결제 금액	22,500원				20,000원			
세부내용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1회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② 집단규모 : 1:3 이내 소그룹 운영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① 클래식 이론 및 실기(주1회) ② 정서순화프로그램(주1회) ③ 일반 연주회 관람(반기별 1회) ④ 향상음악회 참여(반기별 1회) ⑤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대여(1개월 서비스 참여 후 대여가능) ⑥ 참여 아동 합주(월1회 이상) ※ 1일 2회 서비스 가능(1일 2회 정상결제 가능) 단, 기본서비스 내용에서 ①+②의 경우만 해당함.						월8회, 주2회 (회당 60분)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 기준 1	세부 자격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①~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 시간 보유자						
			예외 인정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 학위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자격 기준 2	■ 클래식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클래식 프로그램 및 정서순화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1인 이상 필요하며,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 없이 서비스 제공불가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사업

사업코드 280212

항 목		내 용							
목 적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성인질환 예방 및 해소를 통해 건강수명의 질적 제고							
추진지역 (시·군·구 단독)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기준	만 7~12세, 만 30~75세							
	가구특성	성인 질환 등 질병 예방을 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성인, 아동							
	중복제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금액	160,000원					20,000원		
	회당 결제 금액	1~11회차		13,330원		-			
		12회차		13,370원					
세부내용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없음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② 집단규모 : 1:25 이하								
	③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자격기준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 건강운동프로그램(수중 및 육상 운동, 레크리에이션 등) • 건강생활교육, 기초체력측정, 운동처방, 기초이학검사 등 (연 2회 - 반기별 90분)						월12회, 주3회 (회당 60분)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기준 1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세부 자격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따른 스포츠지도사* * 1급·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자격기준 2	■ 건강교육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2에 의한 보건교육사, 간호사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사업코드 250212

항 목	내 용											
목 적	■ 노인들의 두뇌활동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 지원											
추진지역 (시·군·구 공동)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	●	●	●	●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제외)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16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금액	144,000원				16,000원						
	회당 결제 금액	36,000원				-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없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기관방문형 등록)											
	② 집단규모 : 두뇌활동교육 1:4 이하 / 체험힐링서비스 1:20 이하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의 인지 능력에 따른 맞춤형 두뇌활동 프로그램 제공 ① 두뇌활동교육 : 퍼즐교구 활용, 인지훈련, 두뇌 게임 등 다양한 도구와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인지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통해 두뇌활동 활성화 ② 체험힐링서비스 : 문화체험을 통하여 정신건강과 몸건강을 위한 서비스 제공						두뇌활동교육 월4회, 주1회 (회당 60분)				
										체험교육 연2회(반기별)		
제공인력 자격기준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실버브레인 또는 노인(실버) 두뇌 및 인지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경력 1년 이상											



찾아가는 건강운동서비스

사업코드 280912

항 목	내 용									
목 적	■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로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지역 (시·군·구 공동)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비스 대상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기준	만 65세 이상(장애인은 연령무관)								
	가구특성	거동이 가능한 노인, 심하지 않은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복제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금액		190,000원				10,000원			
	회당 결제 금액		1~11회차		15,830원		-			
			12회차		15,870원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없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 (※ 추가확보시설 이용 시 기관 등록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 의무)									
	② 집단규모 : 1:10 이하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① 바른체형운동(스트레칭 및 건강체조), 건강관리 및 스포츠 테이핑, 운동지도, 웃음치료,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② 기초체력 검사 및 건강 정보교육(교육일지작성)(연4회)					월12회, 주3회 1:5 이하 (회당 60분) 1:6~1:10이하 (회당 90분)		
제공인력 자격기준	※ 다음 ①~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자격기준 ①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따른 스포츠지도사* * 1급·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자격기준 ②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등록된 스포츠건강관리지도사, 스포츠 테이핑 지도사, 스포츠건강 트레이너 자격 취득 후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사업코드 160712

항 목	내 용								
목 적	■ 체계적인 운동 및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체불균형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신체균형 향상 기여								
추진지역 (시·군·구 공동)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		●	●	●	●	●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만 6-16세							
	중복제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지원 불가							
우선순위	1. Scoliometer(USA)를 이용하여 체간 회전각이 6° 이상인 아동·청소년 2. TMM(tape measure method) 방법을 이용하여 하지길이가 10mm이상 차이 나는 아동·청소년 3. 신체균형능력 검사 평점이 70점 이하인 아동·청소년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60,000원		
	회당 결제 금액	22,500원			20,000원		17,500원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1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추가확보시설 이용) ② 집단규모 : 1:15 이하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 체형교정운동(정적운동, 동적운동, 요가, 필라테스 등), 감각통합 운동, 성장운동						월8회, 주2회 (회당 60분)	
	부가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운동계획 및 영양정보제공						반기별 1회	
제공인력 자격기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바른체형 키성장 서비스를 위한 운동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아래 자격조건 ①~③)모두 충족자) ① 체육학 관련학사(태권도, 무용학은 제외), 체육학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자세교정사 1급								



노인 · 장애인 건강운동서비스

사업코드 280712

항 목		내 용							
목 적		■ 건강 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추진지역 (시·군·구 공동)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특성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 연령 무관)							
	중복제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12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금액	110,000원				10,000원			
	회당 결제 금액	13,750원				-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없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② 집단규모 : 1:25 이하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 건강상태점검(분기1회) •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주2회, 90분) ① 수중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한 근력운동 ② 유산소운동 : 근력, 근지구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실시 ※ 기본서비스 유형(①~②)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월8회, 주2회 (회당 90분)	
제공인력 자격기준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①~③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따른 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 1급·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세부 자격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예외 인정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쿠아로빅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바른몸 바른자세 운동서비스

사업코드 280812

항 목	내 용										
목 적	■ 아동부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바른 자세 교정 및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근육 통증 해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추진지역 (시·군·구 공동)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만 65세 미만									
	중복제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지원 불가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장애인 ※ 가구당 1명에 한함. 65세 미만의 고령자 우선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금액	160,000원				20,000원					
	회당 결제 금액	20,000원				-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없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② 집단규모 : 1:10 이하 (아동청소년, 청장년의 그룹 집단 별도 운영)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① 자세교정(도구를 이용한 근막이완운동-코어근육 회복운동), 테라피요가 소도구 필라테스(근력강화운동) ② 기초체력검사-인바디, 악력검사, 균형검사, 건강정보교육 연4회 ③ 통증자각도 검사(설문지) 연4회						월8회, 주2회 (회당 60분)			
제공인력 자격기준	※ 다음 ①~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자격기준 ①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세부 자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따른 스포츠지도사* * 1급·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자격기준 ②	■ 「자격기본법」 제17조 등록된 요가, 필라테스, 운동 분야 자격소지자로 경력 1년 이상인 자									



1인 가구 사회성 향상 지원 서비스

사업코드 990812

항 목	내 용									
목 적	■ 이웃과 단절 우려가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성 및 자존감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잠재적 사회문제를 예방									
추진지역 (시·군·구 단독)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만 20~70세							
	가구특성		1인 가구							
우선순위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사회적 단절 우려가 있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은둔형 외톨이 등) ② 노인 우울 척도(SGDS) 10점이상 또는 성인우울검사(SES-D) 16점 이상인 자 ③ 재가방문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받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 가구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금액		180,000원				20,000원			
	회당 결제 금액		45,000원				-			
세부내용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1회									
	① 제공장소 : 집단활동형 + 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 ② 집단규모 : 1:10이하 (단, 방문형케어서비스 1:1)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사회성 향상 지원 서비스	① 체험프로그램(요리체험, 약초체험, 목공체험 등)							월4회, 주1회 (회당100분)	
		② 지역문화 탐방 및 문화활동								
		③ 미술활동								
		④ 인문학 및 자존감향상 교육								
부가 서비스	돌봄활동 서비스 (돌봄활동가)	- 이용자 그룹별 돌봄활동가 지정(그룹당 10명) - 돌봄활동가는 일상생활 소통으로 시작하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함. - 안부전화, 프로그램 참여 독려(차량지원), 그룹 내 참여자 간 유대감 형성 지원, 정서적 지지 등							수시	
		방문형 케어 서비스		대형빨래, 소독방역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기준 1	■ 사회성 향상 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①~③)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심리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③ 인문학 또는 심리학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세부 자격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인문학 및 자존감 향상 교육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인문학 및 자존감 향상 교육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인문학 및 자존감 향상 교육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자격기준 2	■ 부가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①~③)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③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치유농업서비스

사업코드 991312

항 목	내 용									
목 적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건강증진의 회복과 더불어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기여									
추진지역 (시·군·구 공동)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연령기준	만 10세 이상								
	가구특성	①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② 「경도인지장애」판정을 받은 자 ▪ 치매안심센터장의 등록확인서, 추천서 또는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가 있는 자(※한의원 제외)								
우선순위	발달 장애인	①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② 취업(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등 포함) 및 직업훈련 참여자 ③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④ 법정 한부모 가정(한부모 가족증명서 제출 인정)								
	경도인지 장애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되는 자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 가격 : 20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회당결제금액	45,000원			40,000원		35,000원		3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② 제공기간 : 12개월 ③ 재 판 정 : 1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② 집단규모 : 개별(1:1) ~ 집단(1:10 이하) *대상군에 따라 프로그램 분리운영 필수 ③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 신체활동 프로그램 · 힐링산책, 생활체조, 명상체험, 자연을 통한 오감체험, 계절변화 관찰하기 등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도구 활용 신체활동 프로그램 ■ 치유농장의 작물을 활용한 푸드테라피 ■ 실·내외 체험활동(우천시 진행 가능) · 작물심기 및 수확하기, 친환경 텃밭(모종심기) 및 풋말 만들기 · 반려식물 만들기, 식물을 활용한 오감체험, 족욕체험, 텃밭 전시회 · 롤링페이퍼 자연물 엽서 만들기, 농작물 수확체험 ■ 치유농장 특성화 서비스 · 제공기관별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월4회, 주1회 (회당12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사전검사 실시, 연간 서비스 제공 계획 안내 및 조율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선택 제공 - 4단계 : 사후검사 실시 및 피드백 제공(종결)		
제공기관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 모두가 충족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① 장애인 또는 경도인지장애 이용기관* 대상 농업·농촌 체험활동 프로그램 과정 연 20시간** 이상 운영 실적과 치유농업 인증 또는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치유농장		
	*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기본법」 시행규칙 41조), 특수학교(국·공립·사립), 특수교육지원센터 ** 프로그램 과정 연 20시간 이상 기준: 2023년 1월 ~ 2026년 6월까지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치유농업 관련 인증 또는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농장		
	②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등록 요건 검토를 위한 현장심사(프로그램, 시설현황 외) 실시 예정 ③ 시·군 제공기관 등록 시 경상남도 및 지원단으로부터 사업계획 컨설팅을 협조받을 수 있음		
제공인력	※ 다음 ①~③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자격 기준 ①	• 치유농업사 1급~2급	
	자격 기준 ②	• 다음 (㉠~㉣)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이면서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기초심화 교육을 (2022년 이후) 수료한 자 ㉣ (1~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자	
	자격 기준 ③	• 심리·상담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교육학(상담·심리), 재활학, 특수교육(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관련 서비스 전공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치유농업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치유농업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치유농업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안전관리 기준	① 안전관리기준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야외체험 관련관련서류) 체험시설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상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체험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효과성 검사	① 「대상」유형에 맞는 검사 도구 활용(필수) 필수 ② (필수)+농장별 추가 검사 가능		
	대상군	검사도구	검사횟수
	발달장애인	① 손평가 기구(악력계, 핀치게이지-유압식) ② 스트레스(유비오패파)	사전·사후
	경도인지장애	① 인지선별검사(CIST) ② 우울증 측정지 ③ 스트레스(유비오패파)	사전·사후
	제공인력	① 모니터링 일지	상시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26. 7. 시행]

신규 사업코드 991412

항 목	내 용										
목 적	■ 가족관계 개선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구성원 간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족 체계의 건강한 기능 회복을 지원										
추진지역 (시·군·구 공동)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욕구기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									
	가구특성 욕구판단	• 욕구 판단은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함. ① 이혼·별거·사별·재혼 등 가족 사건으로 인한 위기 및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추천서,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기관장 추천서를 받은 가족 * 위기 및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 유형(예시):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등 ※ 위의 해당하는 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내용’을 포함한 추천서 (필수) 제출 ② 가족구성원 중 자녀(아동, 청소년, 성인포함) 또는 부모의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가족 ※ 아래의 ㉠~㉣ 중 필수 (택1) 제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u>소견서+임상 심리평가 검사결과지**</u>’를 제출한 가족 *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혹은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 중재한 대상에 한하여 소견서 발급가능 **임상심리평가 검사 도구: MMPI-2(부모용), MMPI-A(아동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신청권자 및 구비서류	■ 신청권자: 부 또는 모, 보호자(주 양육자) ※ 가구 당 1명에 한하여 신청(가구원 전체 유사 서비스를 받는 경우 중복 제한) ■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검사결과지 ※ 단, 추천서, 진단서 등 발급서류는 6개월 이내에 판정된 것에 한하여 인정								
		중복제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마음투자사업)」,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행복e-음 확인)								
우선순위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추천서,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기관장 추천서를 받은 가족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u>소견서+임상 심리평가 검사결과지</u>’를 제출한 가족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① 서비스 가격 : 28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160% 이하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정부지원금	252,000원	224,000원	196,000원	140,000원	70,000원
	회당결제금액	63,000원	56,000원	49,000원	35,000원	17,500원
	본인부담금	28,000원(10%)	56,000원(20%)	84,000원(30%)	140,000원(50%)	210,000원(75%)
② 제공기간 : 5개월						
③ 재 판 정 : 없음						
세부내용	①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② 집단규모 : 1:1 가구					
	※ 개별 면담, 부부·부모자녀·형제자매 등 부분 가족 단위 또는 전 가족 상담 병행 가능 (단, 가족기능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별면담도 가능하나, 월 2회기 이상은 반드시 '2인 이상 참여' 필수)					
	③ 서비스 내용 : 갈등 조정, 의사소통 개선, 역할 재구조화를 위한 가족상담(치료)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필수)	■ 심리검사: 사전·사후 검사(90분) ■ 가족역동분석(120분) ㉠ 역할극 ㉡ 가족간 의사소통 유형 ※ 전체 회기 중 가족역동분석 3회기 이상 실시				월4회 주1회 (가족상담 90분 가족역동분석 120분)
	기본 서비스 (가족 상담 유형) (필수 택1)	가족 생애주기와 위기 정도에 따른 가족상담 유형(3가지)				
		■ (F1) 기초·예방형(가족기능 저하 예방 및 초기 갈등 완화 중심) •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에 대한 기초 점검 •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방식 진단 및 개선 교육 • 스트레스 관리, 감정표현, 갈등 상황 대처 방법 안내 • 가족 역할 인식 및 긍정적 상호작용 강화 활동				
		■ (F2) 갈등조정형(반복적·구조적 갈등 완화 및 관계 조정 중심) • 가족 갈등 원인 및 상호작용 구조 분석 • 갈등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중재 및 조정 • 가족 내 역할 기대 불일치 조정 지원 • 감정 폭발·회피 등 부적응적 상호작용 패턴 개선 • 합의 도출 및 갈등 관리 계획 수립				
		■ (F3) 회복·재구성형(위기 이후 관계 회복 및 가족기능 재구성 중심) • 이혼·별거·사별·재혼·질병·사건 등 가족 위기 이후 심층 개입 • 가족 규칙·역할·경계의 재설정 및 재구조화 • 상실·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및 회복 지원 • 장기 갈등 가정의 관계 재정립 및 향후 유지 전략 수립				
		④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사전 선별·등급화(F1~F3) 후 서비스 시작 전 전가족 대상 사전심리검사 실시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립						
- 3단계 : 전 가족대상 가족역동 분석						
- 4단계 : 가족상담 목표 및 계획 설정 후 가족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 5단계 : 서비스 이용 효과 모니터링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의사소통·갈등 인식 변화, 정서 스트레스 감소 등)						
- 6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실시)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다음 ①~③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자격 기준 ①	• 상담심리사 1급,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 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증 소지자로서 가족상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단, 전공 교과목 9학점 이수 필수 포함*) * 전공 인정 교과목: 가족상담(치료), 가족관계론, 부부상담, 상담실습, 집단상담, 사례연구, 인간발달 중 9학점 이수 필수 (학점이수 증빙 서류 확인)
	자격 기준 ②	• 심리, 상담학, 교육학(상담·심리), 예술(놀이, 미술) 치료·상담, 가족상담 관련학 전공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가족상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 박사 이상 학위취득 후 가족상담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단, 전공 교과목 9학점 이수 필수 포함*) * 전공 인정 교과목: 가족상담(치료), 가족관계론, 부부상담, 상담실습, 집단상담, 사례연구, 인간발달 중 9학점 이수 필수 (학점이수 증빙 서류 확인)
	자격 기준 ③	•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상담학회 등)에서 수여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가족상담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 관련 전문학회 기준(아래의 ㉠~㉢ 모두 충족)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 명시) ㉣ 사단법인 (단, 전공 교과목 9학점 이수 필수 포함*) * 전공 인정 교과목: 가족상담(치료), 가족관계론, 부부상담, 상담실습, 집단상담, 사례연구, 인간발달 중 9학점 이수 필수 (학점이수 증빙 서류 확인)
효과성 검증 척도	■ 아래 검사 도구 중 [필수 척도] 1개를 기본으로 실시하며, 기관에 따라 [선택척도] 추가 검사 시행 • 필수척도: FACES-Ⅲ(가족적응성과 응집성 척도) • 선택척도: IFR,FRS(가족관계 척도), FAD(가족사정 척도), KMS(결혼만족도 척도) KMCS(부부갈등 척도) ※ 필요시 자녀, 부모 등 개인 대상 심리검사가 추가 실시 ※ 효과성 검사: 서비스 시작 전과 종료 시 사전·사후 2회 이상 실시 및 결과 제출(※ 별도 안내 예정) -제출처: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필수 및 선택척도 검사지 기준정보 부록(page 61) 참고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표준모델)

사업코드 990401

항 목	내 용									
목 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추진지역 (시·군·구 단독)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연령기준	19세~39세 청년(※ 창원시 조례 적용)								
	육구기준	BMI 23 이상 18.5 미만인 자(※ 1개월 이내 BMI 수치 발급 서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서비스 유형	▶ 제공장소: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단, 사도가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시설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청년사업단과의 협의 하에 본 제공기관 소재지 지자체에서 추가확보 시설 등록 및 승인가능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서비스기간 및 재판정	▶ 서비스 기간: 3개월 ▶ 재판정: 1회									
집단규모	▶ 1:1 ~ 1:4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서비스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및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지도 등							1:1 주 2회	
									1:2 주 3회 (회당 6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1:3 주 3회 (회당 70분)		
								1:4 주 3회 (회당 9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시설보유 장비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표준모델)

사업코드 991212

항 목	내 용									
목 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추진지역 (시·군·구 단독)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육구기준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우선순위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중복제한	▶ 과거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사업코드:991212) 선정 이력이 있거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중복제한으로 서비스 불가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 공 기 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서비스 유형	▶ 제공장소: 재가 방문형									
서비스기간 및 재판정	▶ 서비스 기간: 6개월 ▶ 재판정: 없음(※ 6개월 이용 후, 서비스 종료)									
집단규모	▶ 1:1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기준				본인부담 비율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12,000원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24,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48,000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96,000원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168,000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0%				240,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예술전문프로그램: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 악기 대여 지원 가능
		미술 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 교재·교구 지원
		문화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 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맞는 추가 활동
	부가서비스	·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설계 · 3단계 : 서비스 제공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부 록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효과성 측정 검사도구

세부내역

■ 필수척도

-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자 전원 필수척도 활용을 통한 사전·사후 검사 실시
 - FACES-Ⅲ(가족적응성과 응집성 척도) 61

■ 선택척도

- 제공기관에서 필요 시, 아래의 추가검사 도구 활용 가능
 - 1. IFR(가족관계 척도) 65
 - 2. FRS(가족관계 척도) 67
 - 3. FAD(가족사정척도) 69
 - 4. KMS (결혼만족도 척도) 71
 - 5. KMCS (부부갈등 척도) 72

※ (원칙) 필수검사 척도는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제공기관에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필수척도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FACES-Ⅲ(가족적응성과 응집성 척도)

● 아래 척도는 이용자 사전·사후 검사 필수 척도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록·보관 후 효과성 측정 플랫폼에 결과값 입력 ※ 제출방법: 별도안내

척도명	FACES-Ⅲ(가족적응성과 응집성 척도)	대상	가족구성원 전체 (성인용)
척도소개	■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척도구성	■ 총 20문항,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 ① 응집성(홀수 문항) ② 적응성(짝수 문항)		
채점방법 및 해석	■ 모든 문항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응집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밀착된(enmeshed)상태, 적응성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혼란스러운 상태 의미		
출처	■ 김유숙, 전영주, 김수연 (2003). (원척도 : Olson & Wilson, 1985)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	----	-----	-----

※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현재 자신의 가족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아래 1~5점 사이에서 골라서 각 문항 옆에 써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의 친구들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의 훈육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 내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식구 모두가 가장(지도자)으로서 행동할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끼리 더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은 체벌(상, 벌)에 대해 함께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에서는 가녀들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가족은 함께하는 활동이 있을 때 모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가족에서 규칙(규율)이 바뀌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가족에서는 가사일에 대한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고정 되어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가족은 각자의 일을 결정할 때 집안식구들과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가족에는 가정(지도자)이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9.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가족에서는 누가 가사일을 하는지 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FACES-Ⅲ(가족적응성과 응집성 척도)

● 아래 척도는 이용자 사전·사후 검사 필수 척도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록·보관 후 효과성 측정 플랫폼에 결과값 입력 ※ 제출방법: 별도안내

척도명	FACES-Ⅲ(가족적응성과 응집성 척도)	대상	가족구성원 전체 (아동용)
척도소개	■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척도구성	■ 총 20문항,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 ① 응집성(홀수 문항) ② 적응성(짝수 문항)		
채점방법 및 해석	■ 모든 문항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응집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밀착된(enmeshed)상태, 적응성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혼란스러운 상태 의미		
출처	■ 김유숙, 전영주, 김수연 (2003). (원척도 : Olson & Wilson, 1985)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	--	----	--	-----	--	-----	--

※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현재 자신의 가족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아래 1~5점 사이에서 골라서 각 문항 옆에 써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각자 가족의 친구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에서 우리들은 집안에서 우리 자신들과 관련된 규칙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오로지 우리 가족끼리만 함께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EX. 집안 문제 결정, 여행, 외식 등)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상황에 따라서 누구라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외부사람들보다 우리 가족끼리가 더 친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상황과 때에 따라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자유시간을 함께 모여 즐기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집에서는 어른고 자녀가 함께 모여서 잘못된 일에 대한 벌칙을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면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가족은 가족 행사에 모두 함께 모인다 (EX. 명절, 제사, 생일)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집안에서의 규칙이나 약속은 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가족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 낸다. (EX. 취미, 오락게임 등)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가족은 집안일에 대한 책임을 서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가족은 자신의 일을 결정할 때 가족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가족 중에서는 누가 지도자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집에서는 가족의 협동 및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집에서 어떤 집안일은 꼭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선택척도 ①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IFR(가족관계 척도)

● 아래 ①~⑤ 척도는 [선택 척도]이며, 제공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검사 도구로 활용 가능

척도명	IFR(가족관계 척도)	대상	가족구성원 전체
척도소개	■ 가족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양상과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채점방법 및 해석	■ 역채점 문항(* : 1, 2, 4, 5, 8, 14, 15, 18, 20, 21, 23번 문항)을 고려하여 총 점수를 산출 후 응답한 문항의 개수를 빼고 100을 곱한 다음, 응답한 문항 × 6으로 나눔 ■ 가능한 산출 점수의 범위를 0~175점 ■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이 더 크다. 30점 이상은 임상적으로 유의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70점 이상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폭력 존재 암시.		
출처	■ 김승권, 김연우 (2012). (원척도 출처 : Hudson, 1997)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	--	----	--	-----	--	-----	--

※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가족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아래 1~7점 사이에서 골라서 옆에 써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보살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가족은 훌륭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라 가족은 내 신경을 건드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전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한순간도 우리 가족과 함께 있기가 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우리 가족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은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우리 가족에게는 친밀감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우리 가족 안에서 나는 낯선 사람같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우리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우리 가족은 서로 너무 미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우리 가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우리 가족에게는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우리 가족에게는 온갖 사람이 넘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우리 가족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유쾌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우리 가족은 나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다른 가족들이 우리 가족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우리 가족은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 진정한 근원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우리 가족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선택척도 ②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FRS(가족관계 척도)

● 아래 ①~⑤ 척도는 [선택 척도]이며, 제공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검사 도구로 활용 가능

척도명	FRS(가족관계 척도)	대상	가족구성원 전체
척도소개	가족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양상과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채점방법 및 해석	5개 요인, 총 22문항 구성 - 구성: 영성, 의사소통, 경제적 안정, 사회지지, 공적지지		
출처	신주미 (2023) 가족회복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	----	-----	-----

※ 다음은 당신의 현재의 가족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우리 가족은 서로 터놓고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가족은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가족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가족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가족은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우리 가족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우리 가족은 여가생활을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외에 상의할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우리 가족은 국가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안정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우리 가족은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있어 줄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우리 가족은 의료, 돌봄 등 사회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우리 가족은 신의 도움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우리 가족은 서로 정직하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우리 가족은 갑작스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자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우리 가족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우리 가족은 마음이 힘들 때 국가적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우리 가족은 매사에 상의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우리 가족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우리 가족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선택척도 ③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FAD(가족사정척도)

● 아래 ①~⑤ 척도는 [선택 척도]이며, 제공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검사 도구로 활용 가능

척도명	FAD(가족사정척도)	대상	아동·청소년, 성인
척도소개	■ 가족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척도구성	■ 7개 하위척도(문제해결, 의사소통, 역할,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관여, 행동통제, 전반적 기능)로 구성		
채점방법 및 해석	■ 하위척도 점수는 해당 하위 척도에 있는 항목들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역채점문항(*표시)은 역으로 채점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 낮은 가족사정 척도 점수는 가족 기능이 건강함을 의미한다. ■ 실증적 연구 결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가족원이 있는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의 하위척도 평균은 다음과 같다.		
출처	■ 이유숙, 전영주, 김수연 (2003). (원척도 출처) Epstein Baldwin, & Bishop, 1993)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	----	-----	-----

※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생활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아래 1~4점 사이에서 골라서 각 문항 옆에 써 주십시오.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기분이 나쁘면 가족들은 그(그녀)가 왜 그런지를 안다.	①	②	③	④
3. 위기가 닥치면 서로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갑자기 큰 일 맞게되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①	②	③	④
5.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6. 슬픈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자신에게 중요한 일일 때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8. 집에서 할 일이 충분히 나뉘어져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9. 규칙을 어겨도 그냥 지나간다.	①	②	③	④

10. 빗대서 말하기 보다는 직접 솔직하게 얘기한다.	①	②	③	④
11.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나 걱정에 대해 얘기하기를 꺼린다.	①	②	③	④
13.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14. 집단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후에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15.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다.	①	②	③	④
16.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7.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18. 서로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9. 우리에게 관계 있는 일에만 서로 관여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20. 식구들이 개인적인 관심사를 알아볼 시간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1.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서로에게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2. (나쁜) 감정문제가 나타나면 거의 풀고 지나간다.	①	②	③	④
23. 다정다감한 편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24. 어떤 이득이 있을 때에만 서로에게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5. 서로에게 솔직하다.	①	②	③	④
26. 어떤 규칙이나 기준을 고집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7. 어떤 일을 부탁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일러줘야 한다.	①	②	③	④
28. 집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29. 함께 있으면 자 지내지를 못한다.	①	②	③	④
30. 가족으로서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31. 비록 좋다고 하는 것이지만 서로의 생활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	①	②	③	④
32. 서로를 믿는다.	①	②	③	④
33. 누가 해 놓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34.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선택척도 ④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KMS (결혼만족도 척도)

● 아래 ①~⑤ 척도는 [선택 척도]이며, 제공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검사 도구로 활용 가능

척도명	KMS (결혼만족도 척도)	대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자(부부)
척도소개	■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		
척도구성	■ 총 3문항으로 긴 설문지를 사용하기 힘든 상황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개발됨		
채점방법 및 해석	■ 각 문항 저수를 모두 합하여 총점을 산출 ■ 점수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출처	■ 윤경자(1997) (원척도: Schumm et ., 1986)		
참고척도	■ PREPARE/WMRICH 검사,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 개정판 K-MSI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	--	----	--	-----	--	-----	--

※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현재 자신의 결혼생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아래 1~7점 사이에서 골라서 각 문항 옆에 써 주십시오.

문항내용	최고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최고로 만족
〈남편용〉							
1. 귀하는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는 배우자로서 부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는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인용〉							
1. 귀하는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는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족 온(溫) 마음회복 지원서비스

KMCS (부부갈등 척도)

● 아래 ①~⑤ 척도는 [선택 척도]이며, 제공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검사 도구로 활용 가능

척도명	KMCS (부부갈등 척도)	대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자(부부)
척도소개	■ 부부 갈등의 양상과 패턴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척도구성	■ 총 27문항,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 ① 의견교환 (1~11번 문항) ② 갈등에 대한 논의 (12~16번 문항) ③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17~27번 문항)		
채점방법 및 해석	■ 하위척도 점수 및 총점을 해당하는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점수는 각 분리된 단계별로 각 항목의 점수를 간단히 총 합산한다. 1단계에서는 5, 7, 9와 11번 문항은 역산 점수, 2단계에서는 “당신을 향한 존경”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은 역산점수 그리고 3단계에서는 2, 4, 5, 6, 그리고 7번 문항은 역산 점수화 한다.		
출처	■ 정태신 (원척도) Eggeman, Moxley, & Schumm, 1985)		

이용자		총점		검사일		검사자	
-----	--	----	--	-----	--	-----	--

※ 각 질문에 언급된 행동에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자주 관련되는지를 다음 범주를 사용하여 나타내 주길 바랍니다. 각 항목 왼쪽의 _____에 숫자를 적어서 얼마나 빈번한지를 나타냅니다.

- 범주 : ① 결코 ② 가끔 ③ 때때로 ④ 자주 ⑤ 거의 항상

당신과 당신의 남편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자주:

- _____ 1. 두 분은 서로의 다른 감정을 빠르게 이해하는가?
- _____ 2. 많은 고통 없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가?
- _____ 3. 문제에 대해 서로의 다른 관점을 바르게 헤아리는가?
- _____ 4.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불일치한 의견에 대해 당신의 감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 _____ 5.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문제에 대해 당신이 행하는 방식으로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 _____ 6.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대화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으려 하는가?
- _____ 7.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문제에 관한 당신의 많은 생각에 반론을 주지하지는 않는가?
- _____ 8.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관점이 자신과 다를지라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가?
- _____ 9.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억누르지는 않지만 당신을 당황하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하지는 않는가?

- _____ 10.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억누르지는 않지만 당신을 당황하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하지는 않는가?
- _____ 11. 당신의 남편은 자신에게는 조금도 잘못이 없고 마치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된 것처럼 당신의 좌절감과 노여움을 비난하지는 않는가?

당신과 당신 남편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에 대해 잠시 동안 대화한 후, 얼마나 자주:

- _____ 12. 당신이 불일치하는 의견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는가?
- _____ 13. 당신이 동의하는 의견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는가?
- _____ 14. 두 분은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느낌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가?
- _____ 15. 두 분은 당신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가?
- _____ 16. 다음의 감정이 당신 남편의 얼굴표정과 목소리 톤에 전해지는가?
- | | |
|-----------|----------------------|
| _____ 실망 | _____ 좌절 |
| _____ 화 | _____ 괴로움 |
| _____ 혐오 | _____ 자기연민(그 자신을 위해) |
| _____ 생색 | _____ 냉소 |
| _____ 분개 | _____ 당신을 향한 존경 |
| _____ 적개심 | |

당신과 당신 남편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당신의 불일치가 해결에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시점에서 얼마나 자주:

- _____ 17. 어떤 타협의 종류를 갖고 두 분이 좋다고 여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 _____ 18. 당신은 결국 매우 조금 해결되어진 결정을 만드는가?
- _____ 19. 당신은 두 분을 위해 만족할 만한 결정의 내용을 바르게 갖는가?
- _____ 20. 적어도 두 분 중의 한분은 의견상의 해결로 여전히 불평하기 때문에 당신은 가까운 시일에 그 내용에 대해 다시 논의하게 되는가?
- _____ 21. 당신이 해결되어진 것으로 생각 하자마자 당신의 남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는가?
- _____ 22. 당신의 남편은 기꺼이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는가?
- _____ 23. 당신의 남편이 새로운 가정의 더 나은 해결을 발견하고 당신이 무엇을 제한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 _____ 24. 두 분은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 타협을 할 것인가?
- _____ 25. 그 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가?
- _____ 26.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가?
- _____ 27. 두 분은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가?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소개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상남도로부터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2024. 1. 수탁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경상남도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기획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활성화하며,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제공기관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0조 /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 및 제32조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기능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확충

- 증거기반실천 DB 구축
 - 수요 · 공급 데이터 관리 시스템 고도화
 - 조사연구기반 DB 구축
- 서비스 기획 및 재구조화
 - 신규 사업 기획 · 발굴
 - 사업간 조정 및 재구조화
- 사회서비스 저변 확대
 - 이용자 정보접근성 강화
 - 운영체계 구축



제공자 전문성 강화

-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
 - 수요기반 직무 · 전문교육
 - 사업설명회(사업 지침 교육)
 - 사업 교육수요 조사
- 근무환경 개선 지원
 - CSI 급여 관리 현황 분석
 -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 종사자 정신건강지원사업
 - 제공인력 현장 간담회
- 사업관리 행정전문성 강화
 - 지자체-지원단 네트워크 운영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

- 품질관리 역량 강화 및 확대
 - 현장밀착형 단계별 컨설팅
 - 컨설팅 의무화 추진
- 이용자 중심 품질 제고
 - 온라인 효과성 측정 플랫폼 구축
 - 이용자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이용자 정보접근성 강화
- 부정수급 관리 체계 고도화
 - 현장조사 역량강화
 - 부정수급 관리 DB 구축



고도화영역

- 가격탄력제, 제공기관 규모화, 규제개선 등 공급혁신 추진
- 서비스 보편성 강화 사업(본인부담금 차등화 등)
-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발굴·지원 사업 및 서비스 균형화(일상돌봄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2026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반기 기준정보**

발 행 처 :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발 행 일 : 2026년 7월

주 소 : (5140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본관동 2층

대표전화 : 055) 603-2255

팩 스 : 055) 602-0020

홈페이지 : www.gnssc.or.kr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